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6-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7월 0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 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5년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37세 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의 국내 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6 개월 이상 국내 체재)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해 연락이 닿은 병역의무자의 모와는 별도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당사자	성명 (명칭)	제해주(****.**.*)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국외주소 :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 2025. 3. 29. ~ 2026. 3. 28.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제 시(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적용)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지방병무청	부서명	병역자원과	담당자	유은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전화번호	02-820-4331
	일시	2026년 9월 15일 15시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계장			
성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당사자는 희망 시 대리인 선임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